

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안 번호	16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4.

제 출 자 : 삼 척 시 장

1. 제안이유

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 훈련원관리및 운영에 관한 제명 변경과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 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"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" 제명을 "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조례"로 변경 (제명변경)
-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하지 않고, 농촌지도소장이 필요시 소속공무원과 영농기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겸임(안 제5조)

삼척시조례 제 호

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명중 "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" 를 "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조례" 로 한다.

제5조(공무원)중 "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" 를 "농촌지도소장이 필요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</p> <p>제5조(공무원)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 <u>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</u> <u>로 정한다. 다만 농촌지도소의 소속</u> 공무원과 영농기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겸임 시킬 수 있다.</p>	<p>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조례</p> <p>제5조(공무원) ----- 농촌지도소장이 <u>필요시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</p>